의 안 번 호	2465	【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1차) 안】 **검 토 보 고 서**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8. 2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5.(금)

2. 제안이유

❍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어 202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2024년도 말 조성액 증가

- 예치금 증가 (9,929,020천원 → 12,929,503천원, 증 3,000,483천원)
  - 2024년말 특교금 전입금 예치 및 예금 결산이자 반영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4년도 말 조성액 (A)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(A+D)
		수입(B)	지출(C)	증감 (D=B-C)	
기정(당초)	9,929,020	727,406	9,700,000	△8,972,594	956,426
변경(1차)	12,929,503	1,622,681	9,700,000	△8,077,319	4,852,184

○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수입금액	기정액	증 감
계	14,552,184	10,656,426	3,895,758
전입금	800,000	0	800,000
예치금회수	12,929,503	9,929,020	3,000,483
이자수입	392,681	297,406	95,275
기타수입 (공유재산매각수입)	430,000	430,000	0

○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항 목	지출금액	기정액	증 감
계	14,552,184	10,656,426	3,895,758
예치금	4,852,184	956,426	3,895,758
비융자성사업비	9,700,000	9,700,000	0

○ 2024년도 말 조성액 증가

- 예치금 증가 (9,929,020천원 → 12,929,503천원, 증 3,000,483천원)
  - 2024년말 특교금 전입금 예치 및 예금 결산이자 반영

○ 2025년도 수입계획: 14,552,184천원

- 일반회계 전입금 (800,000천원, 증 800,000천원)
  - 2025년 1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전입금 수입 발생
- 이자수입 (297,406천원 → 392,681천원, 증 95,275천원)
  - 일반회계 전입금 및 매각대금 정기예금 예치 등 이자수입 증가
- 기타수입(공유재산 매각수입): 430,000천원
- 예치금: 12,929,503천원 ※ 정기예금으로 예치

○ 2025년도 지출계획: 14,552,184천원

- 금융기관 예치금 (956,426천원 → 4,852,184천원, 증 3,895,758천원)
- 비융자성 사업비 (9,700,000천원)

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

○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❍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공유재산 매각 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.